

01 연구 간접비란 무엇인가?

연구 간접비는 '연구지원'에 대한 '원가보전'

연구 간접비 이슈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간접비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대학으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급속히 늘면서 연구 간접비의 액수도 대학마다 폐 큰 금액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간접비의 용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글_홍대식 연세대학교 전기·
전자공학부 교수

daesikh@yonsei.ac.kr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포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 연구 간접비에 대한 동상이몽

'반값 등록금 이슈', '연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이슈' 아래 정부가 많은 학교를 무차별적으로 감사하면서 상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연구 간접비의 사용처이다. 감사를 나오는 기관에 따라서 간접비의 용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몰라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연구 간접비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젠가 사석에서 동료 교수들과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연구 간접비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연구비를 수주하면 내 연구비를 연구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그 간접비가 혼적도 없



이 사라지는 것 같다.” “연구 간접비로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떼이지만’ 연구자를 위한 지원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대화는 많은 연구자들이 간접비를 대학이 연구 관련 공문서에 날인해 주는 비싼 ‘직인값’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정부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연구 간접비는 대학에 선심성 지원금 정도로,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우니 가볍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자금’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대학으로 가는 연구 간접비에 대해 정부, 대학, 연구자 간의 인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연구 의뢰기관인 정부는 간접비를 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대학과 연구자에 대한 일종의 지원금 또는 인센티브와 같이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연구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에 내는 일종의 ‘징수금 혹은 세금’으로 간접비를 인식하는 것 같다. 반면 대학은 연구과제 수행 시 사용된 재원을 충당하는 개념으로 간접비를 인식하고 있다. ‘동상이몽’처럼 동일한 연구 간접비에 대해서 다수의 관계자가 각기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연구시설 · 지원인력 유지 위한 실질 경비

그렇다면 연구 간접비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지급되는 것이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일까? 연구 간접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선 연구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구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진다.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으로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해당 과제별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항목을 의미한다. 개별 연구과제 별로 작성·제출되는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비 내역에 기재된 직접경비 항목들, 즉 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인쇄비, 여비, 자료수집비 등 해당 연구과제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된 원가들이다.

반면에 간접비란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간접적이며, 여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다. 주로 대학의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연구지원 시설 및 기자재, 연구 인력, 행정 지원 및 지원 인력 등 대학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이 포함된다. 쉽게 예를 들어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학 내 공간의 전기값, 물값 등이 대표적인 간접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개별 연구에 직접적으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가 없고, 합리적이고 체계적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관련된 모든 연구과제에 적절히 배부해 주어야 한다.

대학 간접비에 대해 알기 위해 미국의 간접비 제도를 살펴보면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규정상 대학의 간접비는 ‘시설 및 관리비(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sts)’라고 공식명칭이 정해져 있으나 보통 간접비라고 통칭된다. ‘시설 및 관리비’는 간접비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시설비’에는 시설과 관련된 제비용, 즉 건물 감가상각비, 전기·수도·난방비, 건물의 운영 및 관리·보수,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재반 부수비용이 포함된다. ‘관리비’는 다양한 관리부서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출로서 연구지원 인력, 재정담당 학장·행정담당 학장과 같은 각 학부의 행정하부조직, 연구지원실·하급 행정직원·대학 본부와 같이 연구를 지원하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성격의 간접비 제도가 처음부터 자리 잡은 것은 아니며, 간접비 산출의 원칙과 관행은 50여 년간의 토론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미국의 대학 간접비 지급은 연방정부가 국방연구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와 대학 간에 간접비의 적정 보전비율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1958년 간접비 산정을 위한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인 ‘BOB(OMB의 전신) Circular A-21’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에 미국 의회는 간접비 비율을 15% 까지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간접비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에는 이를 20%까지 인상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65년 20%의 상한선이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에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정부의 보고서에 따라 1966년 의회는 간접비의 상한선을 아예 철폐한다. 이후 간접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대 이르러서는 50%에 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대학의 간접비율은 40~60%로, 지출한 간접비 원가에 따라 대학과 연방 정부 기관 간의 주기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대학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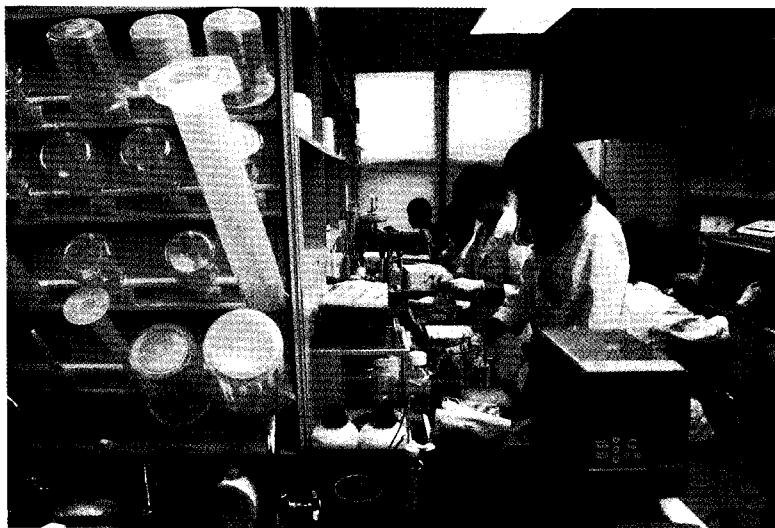
미국의 간접비 제도를 살펴보면 대학이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지원에 쓰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간접비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비를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과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업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수행한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정확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정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전년도를 기준으로 수정된 직접비 대비 연구 간접비를 구하여 이를 개별 연구의 직접비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연구과제로 본다면 개별 연구과제별 실제 간접원가가 아닌 해당 대학의 평균 간접연구원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예와 우리나라 대학 간접비 제도를 고려하여 간접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연구 간접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시설과 지원인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연구수행 기관의 실질 경비’라 할 수 있다. 간접비의 이러한 정의에서 정부나 기업 등 연구 의뢰기관이 직접비 외에 간접비를 연구 수주기관에 지급할 필요성이 생긴다. 간접비는 대학이 연구과정에서 연구지원을 위해 소비하는 실질 경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의뢰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통해 원가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 연구 환경 질적 수준 향상 ·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

그렇다면 ‘원가보전’의 성격을 가지는 연구 간접비는 대학에 어떠한 기여를 하며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연구 간접비가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간접비가 갖는 기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선 연구 간접비는 대학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과 연구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 대학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적극적인 연구지원 등의 연구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간접비는 이러한 연구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 재원으로의 역할을 한다. 첫째로 연구 간접비는 연구 인프라 구축의 재원이 된다. 연구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선진적인 연구 관련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연구 간접비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건물, 설비 등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비와 사용료, 건물 및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조건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된다.



▶ 서울대 의생명연구원 내 인간유전체 연구소 분석실험실 및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실험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포토)

둘째로 연구 간접비는 연구지원을 위한 관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은 연구 간접비를 기관공통경비 및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나아가 연구실 관리비 등 연구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연구 간접비는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어 대학 연구활성화에 기여한다. 연구 간접비는 연구실별 전담행정요원의 인건비, 지원부서의 인건비와 더불어 인센티브 성격의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에 사용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인 연구 간

접비가 연구 의뢰기관에 의해 보전됨에 따라 대학은 현재의 연구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는 연구환경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 간접비는 연구중심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간접비 지급이 '원가보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면, 대학들은 연구 간접비 확보를 위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선도적 연구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학 내 연구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성장하고 대학의 특성화가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 '원가계산방식' 원칙화·분리지급방식 자리 잡아야

위와 같은 연구 간접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대학의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갖추어져야 할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원가보전'이라는 연구 간접비의 의미에 맞추어 간접비 '원가계산방식'을 원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가계산에 의한 연구 간접비 산출은 대학의 간접비 해당 항목 사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접비율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연구과제에 간접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간접비 원가실사 평균은 30% 이상이지만 정부가 대학에 지급하는 간접비율은 평균 10% 수준에 그쳐서 대학이 지출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분야 간접비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 계획을 통해 대학 간접비율의 연차적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아직 국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발생한 연구지원의 실정비가 원가계산에 의해 정부 및 기업이 지급하는 연구 간접비와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 간접비 지급률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현재의 연구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간접비율의 원가계산방식은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연구 간접비 제도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전제조건이다. 원가계산방식은 대학이 재원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자율적 수단인 것과 동시에 연구 간접비가 연구지원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강력한 책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간접비 원가계산방식이 연구지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에 보다 높은 간접비율을 인정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원가계산방식을 적용받는 대학은 자연스레 익년의 연구 간접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인프라 및 지원 체제 구축에 재원을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연구 활성화 및 연구비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두 번째로 연구 간접비의 분리지급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원가계산방식을 통해 간접비 지급률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직접비와 간접비가 미분리 지급되게 되면 오히려 상향조정된 간접비율로 인해 직접비율이 감소하여 연구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자가 직접비만 신청하도록 하고, 연구의뢰기관은 연구자와 대학 측에 직접비와 연구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해야 한다.

셋째로 연구 간접비가 연구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간접비의 집행용도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구 간접비 집행용도는 연구지원의 일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소모성 경비집행에 그치므로 연구 활성화 투자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원가보전’이라는 연구 간접비 제도의 본래 취지상 대학의 연구 간접비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불용항목을 제외하고는 간접비 집행에 있어 대학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비목별 인정범위 용도에 대해서는 제약이 적고, 필요한 경우 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집행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우리도 연구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량적 연구진흥 투자가 가능하도록 연구 간접비 집행용도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연구 간접비 집행이 연구환경의 질적 개선,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 동상이몽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연구 간접비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로 말미암은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데 정부, 대학, 연구자 모두에게 연구 간접비 정책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연구 간접비 제도는 대학의 연구지원 활동에 대한 ‘원가보전’이라는 공통의 인식과 ‘연구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동의이다.

만일 정부가 연구 간접비에 대해 대학에 주는 수혜적 지원이라는 인식, 연구자가 대학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징수금이라는 인식의 틀 속에 있다면 지나친 통제와 불신의 악순환에서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 역시 간접비가 ‘연구지원’에 대한 ‘원가보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교내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연구 간접비는 대학의 연구지원 활동에 대한, 또 연구지원을 위한 재원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전제로 합당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집행될 때 대학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연구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모쪼록 간접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개선되어 대학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ST